

학 칙

제정 : 1982. 3. 1

개정 : 1983. 12. 29, 1985. 3. 1, 1986. 3. 1, 1987. 3. 1, 1987. 9. 1, 1988. 3. 1, 1991. 9. 1, 1992. 3. 1, 1993. 3. 31, 1993. 8. 12, 1994. 7. 6, 1996. 1. 12, 1996. 7. 16, 1997. 3. 1, 1998. 3. 1, 1998. 6. 16, 1999. 3. 1, 1999. 8. 3, 2000. 3. 1, 2001. 2. 1, 2001. 7. 26, 2001. 9. 6, 2002. 2. 1, 2002. 3. 1, 2003. 3. 1, 2003. 9. 1, 2003. 12. 22, 2004. 4. 20, 2004. 6. 23, 2005. 3. 24, 2005. 6. 28, 2005. 8. 12, 2005. 11. 8, 2006. 3. 14, 2006. 8. 1, 2006. 11. 14, 2007. 9. 1, 2008. 1. 30, 2008. 4. 1, 2008. 8. 6, 2009. 1. 1, 2009. 5. 6, 2009. 8. 5, 2010. 2. 17, 2010. 7. 1, 2010. 12. 28, 2011. 4. 29, 2011. 6. 30, 2011. 9. 1, 2012. 2. 22, 2012. 7. 19, 2012. 9. 13, 2013. 2. 28, 2013. 5. 24, 2013. 6. 26, 2013. 8. 27, 2013. 9. 25, 2013. 12. 24, 2014. 2. 27, 2014. 6. 19, 2014. 10. 28, 2015. 1. 1, 2015. 5. 15, 2015. 10. 1, 2016. 3. 30, 2016. 8. 30, 2016. 12. 23, [2017. 2. 10](#), [2017. 3. 1](#), [2017. 8.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부산외국어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는 기독교정신과 민주이념을 바탕으로 창의력과 지도자적 인격을 함양시키고 국제사회에 대한 전문지식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국제전문인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13](#))

제1조의2(인재상 및 노마드 핵심역량) ① 이 대학교의 인재상은 다언어-다문화 기반 글로벌 융복합 창의 인재로 한다.

② 인재상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역량은 도전(N), 융합(O), 혁신(M), 나눔(A), 확장(D)으로 하며, 각 영역에 세부 핵심역량을 설정하여 노마드(NOMAD) 핵심역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 8. 30](#)]

제2조(대학 및 대학원) ① 이 대학교에 영일중대학, 글로벌인문융합대학,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글로벌창의융합대학, 글로벌IT대학, 만오교양대학, 교직과와 대학원, 교육대학원, 산업·경영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및 글로벌골프대학원을 두며,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4.1](#), [2009.1.1](#), [2009.5.6](#), [2010.2.17](#), [2012.7.19](#), [2013.5.24](#), [2014.6.19](#), [2015.1.1](#), [2016. 8. 30](#), [2016. 12. 23](#))

② 이 대학교의 각 대학 및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세부전공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7.19](#), [2013.5.24](#), [2015.1.1](#))

제2조의2(계약학과와 설치 및 운영)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계약학과와 학생정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계약학과와 명칭, 입학정원 및 학위명은 별표2와 같다.

④ 계약학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2.27](#)][전문개정 [2014.6.19](#)]

제2장 부속시설

제3조(부속시설) ① 이 대학교에 부속기관 등을 둔다.(개정 [2007.9.1](#), [2013.2.28](#), [2015.1.1](#), [2016. 8. 30](#))

② 부속기관에는 평생교육원, 교육연수원, 중앙도서관, 외성생활관, 체육부, 언론사, 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 만오교육문화연구원,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개정 2008.4.1, 2012.2.22, 2013.2.28, 2013.6.26, 2014.2.27, 2015.1.1, 2016. 8. 30)

③ 교육연수원에는 영어교육교사연수센터를 두며, 국제지역문화연구센터에는 외국어연구소, 다문화연구소, 비교법연구소, 국제관계연구소, 국제통상연구소, 아시아공동체연구소, 러시아·중앙아시아연구소, 인도언어문화연구소, 동남아지역원, 지중해지역원, 중남미지역원을 둔다.(개정 2008.4.1, 2009.5.6, 2010.2.17, 2012.2.22, 2013.2.28, 2013.6.26, 2014.2.27, 2015.1.1, 2016. 8. 30)

④ 부속시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6. 8. 30)

제3조의2 삭제<2007.9.1.>

제3조의3(중앙도서관) 부속시설 중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대학도서관진흥법시행령에 따른 중앙도서관의 발전계획, 예산, 조직,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시설 및 자료 이용, 도서관운영위원회, 그 밖의 중앙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30.]

제3장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제4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 이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하고, 학·석사연계과정의 학사과정은 3.5년으로 한다. 다만, 학점취득 특별시험, 학점초과취득, 계절학기 등의 방법으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업연한을 1학기 내지 2학기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다.(개정 2014.10.28.)

② 이 대학교의 재학연한은 8년으로 하되 편입학자의 재학연한은 편입학 후 이 대학교 수업연한의 2배로 하며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이 대학교의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1, 2012.2.22.)

③ 학업의 수행이 어려운 중증 장애학생으로서 총장의 허가를 받은 학생은 1년간 재학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신설 2011.9.1.)

제4장 학년·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5조(학년 및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

③ 전항의 학기 외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 방학에 개설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수업일수 및 교원의 교수시간)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이상(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②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휴업일) ① 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방학
2. 동계방학
3. 개교기념일
4. 국정공휴일

② 임시휴업 및 휴업기간의 변경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5장 입 학

제8조(입학시기) 입학의 허가 시기는 매학기초로 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9조(입학자격) 이 대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
2.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되는 자
3. 재외국민과 외국인으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자

제10조(편입학) ① 이 대학교의 제3학년 매학기 초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② 편입학(정원 내, 정원 외) 모집인원은 관련 법령(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교육부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운영요령)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17.3.1.)

③ 삭제 <2017.3.1.>

④ 삭제 <2017.3.1.>

제11조(재입학) ① 이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자퇴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2.2.22.)

② 삭제<2012.2.22.>

③ 재입학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입학지원서류) ① 이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 대학에서 정한 서류와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성적증명서(내신성적 포함)
3.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전항 제1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이미 제출한 서류 또는 수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입학시험) ① 신입생 선발은 출신고등학교의 내신성적과 대학수학 능력 시험의 성적 등 입학 전형자료를 활용하여 전형하되, 면접고사, 실기고사, 신체검사를 병과하여 이를 사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대학별고사의 성적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체육.문학.어학.수학.과학특기자의 입학은 특기실적 및 제1항을 병과하여 사정 할 수 있다.

③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의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3.1.)

제13조의 1(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

제13조의 2(회피·제척) ① 지원자 평가에 참여하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회피·제척을 실시해야 한다.

② 회피·제척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8.24.]

제14조(입학허가) 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및 졸업 후에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한 서류와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3.1.)

1. 지원 자격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7.3.1.)
2. 지원자의 귀책사유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각종 증명서 등 전형자료에 허위 사실

또는 기재 금지사항이 포함된 경우 (신설 2017.3.1.)

3. 평가자 사전 접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신설 2017.3.1.)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신설 2017.3.1.)

제15조(입학절차)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보증인) (삭 제)

제6장 등 록

제17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이 대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하며 등록금 수납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수강신청) ①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은 해당 기간에 온라인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2.22.)

② 수강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2.2.22.)

제7장 전 부(전 과)

제19조(시기 및 방법) ① 전부(과)는 제2학년 매학기 또는 3학년 개시 30일 이전에 실시하며, 재학 기간을 통하여 1회에 한한다. 단, 특기자전형 입학자 및 편입학한 자는 전부(과)를 허락하지 않는다.

② 삭제 <2012.2.22.>

③ 전부(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절차) (삭 제)

제21조(과목이수) (삭 제)

제8장 휴학, 복학, 퇴학, 제적

제22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동의를 필한 휴학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매학기 소정의 기일내에 온라인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2.]

제23조(휴학기간) 삭제 <2012.2.22.>

제24조(병역휴학) 삭제 <2012.2.22.>

제25조(복학) 휴학한 자는 그 기간 만료 또는 사유 종료로서 복학한다. 단,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제26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호자 동의를 필한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2.22.)

제27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하고 보호자에게 제적 통보를 한다.

1. 재학생 및 휴학 중인 자로서 다음 등록 기간 내에 등록 및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2.2.22.>
3. 삭제 <2012.2.22.>

4. 삭제<2012.2.22.>
5. 삭제<2012.2.22.>
6. 학칙 제61조에 의하여 징계 받아 제적된 자(개정 2012.2.22.)

제9장 교과 및 이수

제28조(교육과정) ① 이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교양과정, 전공과정 및 일반선택과정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2.17, 2013.2.28, 2015.5.15.)

- ② 교직과정이 설치 승인된 학부(과)에 한하여 교직과목을 둔다.
- ③ 국제통상지역전문가 양성과정, 국제언어전문가 양성과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7.9.1., 2010.2.17, 2015.5.15.)
- ④ 삭제<2007.9.1.>
- ⑤ 삭제<2007.9.1.>
- ⑥ 삭제<2008.1.30.>
- ⑦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교과이수단위)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실기 등 총장이 지정하는 교과목은 매학기 30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30조(선수과목의 이수) (삭 제)

제31조(부전공) ① 부전공은 제2학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부전공을 인정하고, 이를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표시한다.(개정 2013.2.28.)

- ② 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복수전공) ① 복수전공은 제2학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교과목 및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 ②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의2(연계전공) ① 연계전공은 제2학년 1학기부터 제3학년 2학기 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교과목 및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 ② 연계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의3(국제통상지역전문가 양성과정) ① 국제통상지역전문가 양성과정(GLE)을 설치하여 제2학년 1학기부터 이수하게 할 수 있으며, 소정의 교과목 및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 ② 국제통상지역전문가 양성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의4(국제언어전문가 양성과정) ① 국제언어전문가 양성과정(ILE)을 설치하여 제2학년 1학기부터 이수하게 할 수 있으며, 소정의 교과목 및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05.11.8.)

- ② 국제언어전문가 양성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5.11.8.)

제32조의5(실무외국어인력 양성과정) 삭제<2010.2.17.>

제32조의6(한국어전문가 양성과정) 삭제<2008.1.30.>

제32조의7(학·석사통합과정)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위해 학·석사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

제32조의8(외국인편입생 합작학과) 외국인편입생을 위하여 합작학과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2.28.]

제32조의9(학·석사연계과정) 학사과정과 대학원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0.28.]

제32조의10(융합전공) ① 기존 학부, 학과 또는 전공 교육과정을 융합하여 융합전공을 운영할 수 있으며, 소정

의 교과목 및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② 융합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30.]

제32조의11(자기설계복수전공) ①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소정의 교과목 및 학점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② 자기설계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30.]

제33조(수업)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방송통신수업 또는 현장실습 수업을 할 수 있다.

제34조(교과목번호) 교과목번호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5조(시험) 시험은 매학기 중간 및 기말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시험을 행할 수 있다.

제36조(출석평가) 학생은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결석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결석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낙제가 된다.(개정 2015.1.1.)

제37조(종합시험) (삭 제)

제38조(학업성적)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 표시한다.

실 점	등 급	평 점
95 ~ 100	A+	4.5
90 ~ 94	A	4.0
85 ~ 89	B+	3.5
80 ~ 84	B	3.0
75 ~ 79	C+	2.5
70 ~ 74	C	2.0
65 ~ 69	D+	1.5
60 ~ 64	D	1.0
0 ~ 59	F	0.0

③ 각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D급 이상과 P를 급제로 하고 F급 및 NP를 낙제로 한다. (개정 2011.4.29.)

④ 장애학생들이 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필, 점역, 확대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1.9.1.)

제39조(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한 자에게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추가시험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유서를 제출하여 교학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2.28.)

제40조(학점의 인정과 취소) ①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 학점을 인정한다.

② 인정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하여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41조(이수학점) ① 매학기 취득학점은 17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19학점을 초과 취득할 수 없다.(개정 2009.5.6.)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한 예외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8.8.6, 2010.2.17.)

③ 삭제<2010.2.17.>

④ 삭제<2010.2.17.>

제42조(졸업 및 수료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며,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학년 : 33학점 이상
2. 제2학년 : 65학점 이상
3. 제3학년 : 98학점 이상
4. 제4학년 : 130학점 이상

(개정 2009.5.6.)

제43조(특별시험) ① 학생은 12학점 범위 내에서 특별시험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특별시험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4조(학사경고) ①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50에 미달인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학기 개강 이전에 본인에게 학사경고를 하고 보호자와 소속 학부(과)장에게 통보한다.

② 학사경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2.22.)

제45조(학사제적) 삭제 <2012.2.22.>

제46조(학점 인정) ① 전부(과), 편입학, 재입학, 및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심사하여 그 학점과 성적을 인정하고 정해진 나머지 과정을 이수하게 한다.

② 학술교류 협정이 체결된 국내외의 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1학년에 한하여 국내 타 대학과의 소정의 협약에 의한 학점인정프로그램 이수 및 우리 대학에서 개설한 특별강좌프로그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학점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④ 방학 중 재학생이 우리대학에서 개설한 영어캠프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학점 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신설 2007.9.1.)

⑤ 입영 또는 복무 중인 자가 해당 기관에서 평가 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한 경우 또는 우리대학에서 개설한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인정 범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신설 2007.9.1.)

⑥ 「고등교육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학 전 고교-대학 연계 심화과정(University-level Program : UP)으로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7.2.10.)

제47조(졸업시험) ① 졸업예정자는 영어졸업인증자격을 취득하고 졸업논문 또는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0.2.17.)

② 졸업논문 또는 전공종합시험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부(과)에 대하여는 실험실습 보고서나 실기발표 또는 공인된 기관의 전공 관련 어학시험 및 자격증 등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0.2.17.)

③ 영어졸업인증자격 및 전공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0.2. 17.)

제48조(졸업과 학위) ① 학칙이 정하는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칙 제47조의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서식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별표3의 학위를 수여한다.(개정 2012.2.22, 2012.7.19., 2013.8.27.(별표2 개정), 2015.5.15.)

②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5.5.15.)

제48조의2(복수학위) ① 국외 타 대학과의 복수학위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양 대학은 각각 별도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복수학위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8조의3(졸업유보)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까지 졸업을 유보할 수 있다.(개정 2010.2.17.)

1.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과정 이수
2. 교직과정 이수

3. 복수전공 과정 이수

제49조(조기졸업) ① 6학기 등록을 필한자로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학칙 제47조의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6.11.14.)

② 조기졸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0조(졸업시기) ① 졸업은 전기 또는 후기로 한다.

② 조기 졸업자도 전기 또는 후기로 졸업할 수 있다.

제10장 학생활동

제51조(총학생회의 설치) ① 학생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 탐구 및 창조적 지성과 지도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부산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총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자치활동의 범위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예술 및 체육활동
2. 의료 및 기술 봉사 등 각 분야의 봉사활동
3.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시 방재 및 지원활동
4. 기타 학생자치활동

④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⑤ 학생회의 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성적 평점평균 2.5이상인자
2. 4-6학기 (부득이한 경우 7학기) 등록한 자
3. 유기 정학이상 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자.(형사처벌이라 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⑥ 학생회의 임원의 범위는 총학생회장, 부회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부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부회장, 총대 의원회장, 부회장으로 한다.(개정 2016. 8. 30.)

제52조(회비) 총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학생단체의 승인)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4조(학생지도) ① 학장은 매학년 초에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학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전한 학생자치 활동을 지도·육성하고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지도 위원회를 둔다.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자치기구 및 동아리 등에서 주관하는 제반 학생활동이 본 대학교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적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지도 및 지원을 한다.

제55조(금지활동) 학생은 학업과 학교의 기본 기능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05.11.8.)

제56조(학생활동의 사전 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호의 집회에 있어서는 목적, 개최일시, 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57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간하

며, 간행물의 편집은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부 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직접징계) 총장은 학생이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접 징계할 수 있다.

제59조(징계자의 재입학 금지)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제11장 포상과 징계

제60조(포상)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61조(징계) ① 학생으로서 학칙 제55조를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징계 처분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5.11.8.)
1~8. 삭제<2005.11.8.>

② 학생징계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2조(장학금)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2장 등 록 금

제63조(등록금) 학생은 매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의2(등록금심의위원회) ① 이 대학교에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학생·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28.]

제64조(실습비) 실험, 실습 및 연구에 관한 비용은 실비로 징수한다.

제65조(등록금의 징수시기) (삭 제)

제66조(등록금의 공시) 등록금의 금액 및 납입기일을 매학기 시작 전에 이를 공시한다.

제67조(반환) 등록금의 반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28.]

제13장 위탁생 및 외국인 학생

제68조(위탁생) 대학학생정원령의 규정에 의거한 정부기관 재직자로서, 그 소속기관장의 위 탁이 있을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정원 외 학생으로 소정 의 전형과정을 거쳐 입학할 수 있다.

제69조(위탁생의 제명) 위탁생의 수학 중 그 소속기관의 직을 사임하였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제70조(외국인 학생의 입학허가) 외국인으로서 제5장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실력을 고사한 후 정원 외에 특별학생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71조(외국인 학생의 과정이수) ① 외국인 특별학생을 위한 과정을 따로 둘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 외국인 특별학생으로서 각 대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 정도에 따라 이수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2조(외국인 학생의 편입학) 외국인 특별학생으로서 대학 편입학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규학생으로 편입학 시킬 수 있다.

제73조(학칙의 준용) 위탁생 및 외국인 특별학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준용한다.

제13장의 2 시간제 학생등록

제73조의 2(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제73조의 3(선발인원) 선발인원은 당해 연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제73조의 4(취득기준학점) 시간제 등록학생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제73조의 5(선발방법 등) 시간제 등록학생의 선발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장 공개강좌

제74조(공개강좌 개설) 직무교양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그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제75조(공개강좌의 과목등)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강자격 및 정원, 장소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장 직 제

제76조(직제) 이 대학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제16장 교수회 및 대학평의회(장명변경 2013.12.24.)

제77조(교수회 설치) ① 이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② 교수회는 전체교수회와 대학별 교수회로 한다.

제78조(교수회 구성) 교수회는 정년트랙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9.13.)

제79조(교수회 소집) ① 전체교수회는 총장이, 대학별 교수회는 학장이 이를 소집하고 각각 그 의장이 된다.

② 교수회는 전임교원 재적 1/4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총장 또는 학장은 이를 소집해야 한다.

제80조(교수회 심의사항)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권에 관한 사항
2.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사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81조(교수회 정족수) 교수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1조의2(대학평의회의 설치) ① 학교법인성지학원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35조의3내지 제35조의7에 의거 대학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이하 "평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의회의 구성, 회의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24.]

제17장 교무위원회

제82조(교무위원회 설치) 이 대학교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83조(교무위원회 구성) ①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각 처장, 각 실장, 각 대학원장, 각 대학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30, 2013.2.28, 2014.6.19.)

② 필요시 총장은 일반 교원 중에서 추가로 교무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제84조(교무위원회 소집)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85조(교무위원회 심의사항) 교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및 이 대학교 제반 규정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학, 학과, 부속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폐지에 관한사항
3. 입학, 졸업, 수업, 시험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장 학교기업 및 현장연수

제86조(학교기업 설치) ① 이 대학교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해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8.6.)

- ② 학교기업은 대학교 교지 내(부산시 금정구 금샘로 485번길 65)에 설치한다.
- ③ 삭제<2008.8.6.>

제87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활용)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 실습에 대하여 총24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1개 학기당 인정학점은 18학점 이내로 한다.(개정 2009.1.1.)

- ② IPP형 일학습병행제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16. 8. 30.)
- ③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8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결과 순이익의 10% 범위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며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학칙에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89조(산학협력관련 현장연수) 이 대학교에서 인정한 대학생 산학협력프로그램에 의해 일정기준 이상의 현장 연수를 수행하면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제87조를 준용한다.

제19장 교원 재임용

제90조(재임용) 이 대학교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규정에 준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05.3.24.)

제20장 학생군사교육단(신설 2008.8.6.)

제91조(설치목적) 이 대학교 재학생 중 올바른 가치관과 품성, 우수한 자질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하여 학생군사교육의 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정예 초급장교를 육성하고자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을 둔다.

[본조신설 2008.8.6.](개정 2013.6.26.)

제92조(구성) ① 학군사관후보생의 모집정원은 육군(학생군사학교)의 당해년도 할당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 8. 30.)

- ②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정원 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학은 학군단에 직원을 둔다.(개정 2016. 8. 30.)

[본조신설 2008.8.6.]

제93조(임무) 학군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군사관 후보생 선발, 교내교육(군사학), 훈육지도
2. 방학기간 중 육군(학생군사학교) 입교 후 입영훈련 실시(개정 2016. 8. 30.)
3. 대학 군장학생 선발 및 관리
4. 전시 대학총장 군사자문 역할

[본조신설 2008.8.6.]

제94조(교육과정) ① 학군사관 후보생 훈련 및 교육은 기초군사 및 동·하계 입영훈련, 교내교육으로 구분되며, 대상, 시기, 기간, 방법 등은 육군(학생군사학교)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6. 8. 30.)

② 입영훈련은 동계 2주, 하계 4주를 실시하며 예비 후보생(2학년)의 경우 입단 전 기초군사훈련(2주)을 실시한다.(개정 2016. 8. 30.)

③ 교내교육은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군사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지정한 과목을 1, 2학기로 나누어 주 단위 4시간을 편성하며, 대학은 학기별 2학점을 인정한다.(개정 2016. 8. 30.)

[본조신설 2008.8.6.]

제95조(기타) 그 밖에 학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개정 2016. 8. 30.)

[본조신설 2008.8.6.]

제21장 자체평가(신설 2009.8.5.)

제96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8.5.]

제22장 학칙개정절차(신설 2008.8.6.)

제97조(제안) 학칙개정이 필요한 경우 각 부서장은 개정안을 주관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9.13.]

제98조(예고) ① 개정안을 제출 받은 학칙개정 주관 부서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간, 제출처, 기타 의견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고를 할 때에 함께 공고한다.

[본조신설 2012.9.13.]

제99조(의견제출) 각 부서장은 예고된 학칙개정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9.13.]

제100조(심의·승인·시행) 총장은 학칙개정안을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법인의 승인을 얻어 확정·시행한다.

[본조신설 2012.9.13.](조명변경 및 개정 2013.12.24.)

부 칙

① 본 학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본 학칙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개정 학칙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통령령 12237호(87. 8. 29) 부칙 제3항에 해당되는 자는 학칙 제2조 제1항, 제11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생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1982학년도부터 1987학년도 사이에 입학한자로서 1990학년도까지 졸업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정원에 관한 졸업정원제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본 개정 학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사제적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 학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사 제적조항중 학사경고 횟수는 본 개정학칙 시행일 이후부터 산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국문학과, 전산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서 각각 학과명칭이 변경된 인문사회대학 국어국문학과와 이공대학 컴퓨터공학과와 각각 재적학생으로 본다.
- ③ (학사제적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제45조 제2호의 경우는 1991년 9월 1일 이후 산정한 평점평균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 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93. 4. 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학칙 제2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1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 학생정원령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칙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변경학칙은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1994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 소속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993학년도 인문사회대학 경영정보학과에 입학한 자는 그 소속을 상경대학 경영정보학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에 동양어대학 인도어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동양어대학 남아시아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6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영어과, 노어과, 남아시아학과, 중앙아시아학과, 외교학과, 경영학과에 재적중인 학생은 이 개정 학칙에서 각각 학부(과) 명칭이 변경된 영어학부, 러시아어과, 인도어과, 중앙아시아어과, 외교학부, 경영학부의 각각 재적 학생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1999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영어능력시험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제47조 내지 제49조의 졸업시험 중 영어능력시험은 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③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1998학년도 이전 철학과(야)로 입학하여 휴학중인 학생은 철학과(주) 재적학생으로 본다. 단, 철학과(주)로 복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야간학부(과)로 전부(과)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에 철학과, 사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학과 명칭이 변경된 문화학과, 역사학과에 각각 재적 학생으로 본다.
- ③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에 상경대학, 이공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소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상경대학의

- 1) 경영학부, 국제회계경제학부(회계학전공), 무역경영정보학부(경영정보학전공), 경영정보학과(야간)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3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부(과)에, 2004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경영학부에,
- 2) 무역경영정보학부(무역학전공), 국제회계경제학부(경제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3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부에, 2004학년도 졸업예정자 부터는 국제통상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공대학의

- 1) 전자컴퓨터공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2학년도 졸업자까지는 정보과학대학 전자컴퓨터공학부에, 2003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정보과학대학 컴퓨터전자공학부에,
- 2) 정보수리과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3학년도 졸업자까지는 정보과학대학 정보수리과학부에, 2004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정보과학대학 정보경영과학부에,
- 3) 사회체육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3학년도 졸업자까지는 정보과학대학 사회체육학과에, 2004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레저.스포츠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 이 학칙 시행 이후 복학또는 재입학하는 학생 중 재적하고 있던 학부가 2개 이상의 모집단위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모집단위 중에서 본인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1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가. 이 학칙 시행이전에 이태리어과, 외교학부, 전자공학과(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명칭이 변경된 이탈리아어과, 외교학과, 전자정보통신공학과(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역사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4학년도 졸업자까지는 역사학과에, 2005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역사관광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컴퓨터전자공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소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1) 2005학년도 졸업자 까지는 컴퓨터전자공학부에,
- 2) 2006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분리된 2개 학부(컴퓨터공학부, 디지털정보공학부) 중 본인이 선택한 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는 200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가. 이 학칙 시행이전에 전공(학과)배정을 받지 아니한 인문계열 재적생은 분리된 국어국문·언어계열 또는 문화·역사관광계열 중 본인이 선택한 계열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전자정보통신공학과(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06학년도 졸업자까지는 전자정보통신공학과(야)에, 2007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멀티미디어학과(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는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 이전에 컴퓨터공학과(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컴퓨터공학과(야)에, 2008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컴퓨터공학부나, 야간학부(과)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는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가. 이 학칙 시행이전에 포르투갈어과, 일본어과, 중국어과, 문화학과, 영어학부(야), 국어국문학과(야), 법학부(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명칭이 변경된 포르투갈(브라질)어과, 일본어학부, 중국어학부, 영상문화학부, 영어과(야), 한국어문학과(야), 법학과(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국어국문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08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한국어문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언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08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언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라.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경영학부(경영전공, 회계전공, e-비즈니스 경영정보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부에, 2008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경영학과, 회계·금융자산관리학과, 경영정보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마.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경영학부(야)(경영전공, 회계전공, e-비즈니스 경영정보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부에, 2008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경영학과(야), 회계·금융자산관리학과(야), 경영정보학과(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바.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국제통상학부(국제무역전공, 국제경제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부에, 2008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국제통상학과, 비즈니스경제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사.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정보경영과학부(정보시스템전공, 정보수학전공, 정보통계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부에, 2008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인터넷비즈니스공학과, 정보수학과, 정보통계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 (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정보시스템학과(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08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인터넷비즈니스공학과에 재적생으로 본다. 단, 인터넷비즈니스공학과로 복학

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보과학대학(주) 또는 야간학부(과)로 전부(과)할 수 있다.

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컴퓨터공학과(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08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컴퓨터공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단, 컴퓨터공학부로 복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보과학대학(주) 또는 야간학부(과)로 전부(과)할 수 있다.

다.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멀티미디어학과(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0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08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디지털정보공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단, 디지털정보공학부로 복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정보과학대학(주) 또는 야간학부(과)로 전부(과)할 수 있다.

④ (전공 미배정에 따른 경과조치)

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학과 배정을 받지 아니한 국어국문.언어계열 재적생은 한국어문학부 또는 언어커뮤니케이션학과 중 본인이 선택한 학부(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학과 배정을 받지 아니한 문화.역사관광계열 재적생은 영상문화학부 또는 역사관광학과 중 본인이 선택한 학부(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전공(학과) 배정을 받지 아니한 경영학부 재적생은 경영학과, 회계.금융자산관리학과, 경영정보학과 중 본인이 선택한 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라.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전공(학과) 배정을 받지 아니한 국제통상학부 재적생은 국제통상학과, 비즈니스경제학과 중 본인이 선택한 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마.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전공(학과) 배정을 받지 아니한 정보경영과학부 재적생은 인터넷비즈니스공학과, 정보수학과, 정보통계학과 중 본인이 선택한 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바.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전공(학과) 배정을 받지 아니한 경영학부(야) 재적생은 경영학과(야), 회계.금융자산관리학과(야), 경영정보학과(야) 중 본인이 선택한 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과소속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수학점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 종전의 학칙인 취득학점 18학점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21학점(법학부 23학점)을 적용한다. 다만 학적변동에 의하여 2008학년도부터 졸업하는 자는 이 개정 학칙을 적용한다.

③ (졸업 및 수료학점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 종전의 학칙인 졸업학점 140학점(법학부 150학점)이상으로 하며,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제1학년 : 35학점(법학부 38학점)이상

제2학년 : 70학점(법학부 76학점)이상

제3학년 : 105학점(법학부 114학점)이상

제4학년 : 140학점(법학부 150학점)이상을 적용한다. 다만 학적변동에 의하여 2008학년도부터 졸업하는 자는 이 개정 학칙을 적용한다.

④ (학사경고에 대한 경과조치)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인 3학점을 적용한다. 다만 학적변동에 의하여 2008학년도부터 졸업하는 자는 이 개정 학칙을 적용한다.

⑤ (학과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언어학과, 언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적중인 학생(휴학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영어학부 언어커뮤니케이션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 변경학칙 제2조 제1항 및 모집단위 변경과 모집중단에 따른 경과조치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가. 이 학칙 시행이전에 영어학부(통역번역전공,영미문학전공,언어커뮤니케이션전공)에 재적중인 학생중 200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부에, 2009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영어학부(관광·컨벤션영어전공, 영어커뮤니케이션·통번역전공, 영미문학·문화컨텐츠전공, 영어·IT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나. 이 학칙 시행이전에 영상문화학부, 국제비서학부, 정보수학과, 경영정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영상미디어학과, 국제비서학과, 정보수리학과, e-비즈니스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이 학칙 시행이전에 법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0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부에, 2009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법·경찰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라. 이 학칙 시행이전에 디지털정보공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0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부에, 2009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디지털미디어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마. 이 학칙 시행이전에 정보통계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0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09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응용통계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바. 이 학칙 시행이전에 인터넷비즈니스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0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09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e-비즈니스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e-비즈니스학과에 복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교과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부(과)로 전(부)과할 수 있다.
 - 사. 이 학칙 시행이전에 영어과(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0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09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영어학부(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아. 이 학칙 시행이전에 일본어과(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0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09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일본어학부(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자. 이 학칙 시행이전에 중국어과(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0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09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중국어학부(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③ (모집중단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에 불어과(야), 독일어과(야), 러시아어과(야), 한국어문학과(야), 법학과(야), 경영학과(야), 회계·금융자산관리학과(야), 경영정보학과(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0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09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불어과, 독일어과, 러시아어과, 한국어문학부, 법·경찰학부, 경영학과, 회계·금융자산관리학과, e-비즈니스학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위 해당학부(과)가 주간에 없는 경우나 주간으로 복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부(과)나 야간학부(과)로 전부(과)할 수 있다.

부 칙

- ① 이 변경 학칙은 2005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변경 학칙 제32조의4는 이 학칙 시행 이전 200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③ (경과조치) 변경 학칙 제32조의5는 이 학칙 시행 이전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④ (경과조치) 변경 학칙 제32조의6은 이 학칙 시행 이전 2005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변경 학칙 제11조의2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 ③ (모집중단에 따른 재입학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불어과(야), 독일어과(야), 러시아어과(야), 한국어문학과(야), 법학과(야), 경영학과(야), 회계·금융자산관리학과(야), 경영정보학과(야)의 제적생 중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학부(과) 주간 또는 교과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부(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 ① 이 변경 학칙 및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가. 이 학칙 시행이전에 일본어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소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1) 2009학년도 졸업자까지는 일본어학부에,
 - 2) 2010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분리된 2개학부(커뮤니케이션일본어학부, 비즈니스일본어학부) 중 본인이 선택한 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나. 이 학칙 시행이전에 일본어학부(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09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부에, 2010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비즈니스일본어학부(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이 학칙 시행이전에 경영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09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10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경영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라. 이 학칙 시행이전에 응용통계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데이터경영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마. 이 학칙 시행이전에 회계·금융자산관리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09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10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는 회계·세무행정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이 변경 학칙은 2006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학칙 제49조(조기졸업)의 경우는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이 변경 학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0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②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어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국제통상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국제무역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이 학칙 제46조 제4항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변경 학칙은 2008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변경 학칙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변경 학칙 제2조 제1항과 제3조 제2항은 2008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제3조 제3항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8. 8. 6.)

- ① (시행일)이 변경 학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는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회계·세무행정학부(회계전공, 세무행정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회계·세무행정

학부(회계·금융관리전공, 세무행정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비즈니스경제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경제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컴퓨터공학부(컴퓨터응용전공, 소프트웨어개발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중 2011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부에, 2012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컴퓨터공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라.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레저·스포츠학부(사회체육전공, 골프지도전공, 레저·스포츠경영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사회체육학부(생활체육지도전공, 골프전공, 스포츠경영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9. 1. 1.)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현장실습 학점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87조에 의한 학점인정은 2008년 9월 1일 이후 현장실습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9. 5. 6.)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이수학점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2008학년도 이전 법·경찰학부 입학자의 최대이수학점은 21학점을 적용한다. 다만, 학적변동에 의하여 2012학년도부터 졸업하는 자는 이 개정 학칙을 적용한다.
- ③ (수료요건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 가. 2008학년도 이전 법·경찰학부 입학자의 수료학점은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단, 학적변동에 의하여 2012학년도부터 졸업하는 자의 수료학점은 개정 학칙을 적용한다.
 - 나.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종전의 부칙(2005.6.28.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개정 2009. 8. 5.)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0. 2. 17.)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졸업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학칙 제47조에 의한 졸업 시험은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종전 학칙을 적용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학칙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10. 7. 1.)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중앙아시아어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터키·중앙아시아어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0. 12. 28.)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4. 29.)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6. 30.)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무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2011년 3월 5일부터 부총장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1.9.1.)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하고 있는 장애학생은 개정된 학칙에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2.2.22.)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2.7.19.)

- ①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학생재적 경과조치)
- 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영어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5학년도 졸업자까지는 영어학부에, 2016학년도 졸업자부터는 분리된 2개 학부(영어학부, 영어통번역학부) 중 본인이 선택한 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불어과, 임베디드IT학과, 데이터경영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5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6학년도 졸업자부터는 프랑수어과, 임베디드소프트웨어학과, 데이터경영·금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사회복지학과, 사회체육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5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16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스포츠·재활복지학부(재활복지 전공), 스포츠·재활복지학부(사회체육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위 해당학부(과)로 복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부(과)로 전부(과)할 수 있다.
- 라.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정보수리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5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16학년도 졸업자부터는 데이터경영·금융학부 또는 디지털미디어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위 해당학부(과)로 복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과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부(과)로 전부(과)할 수 있다.
- ③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재입학 경과조치)
- 가.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영어학부의 제적생 중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2015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부에, 2016학년도 졸업자부터는 분리된 2개 학부(영어학부, 영어통번역학부) 중 본인이 선택한 학부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나.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정보수리학과 제적생 중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2015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16학년도 졸업자부터는 데이터경영·금융학부 또는 디지털미디어학부 또는 교과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부(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다.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사회복지학과, 사회체육학부 제적생 중 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2015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학과에, 2016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스포츠·재활복지학부(사회체육 전공), 스포츠·재활복지학부(재활복지전공) 또는 교과과정이 가장 유사한 학부(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12.9.13.)

-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2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 변경 학칙의 적용은 2012년 7월 22일부터 한다.

부 칙 (개정 2013. 2. 2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5.24.)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단,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6. 26.)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8. 27.)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3.9.25.)

①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며,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가.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영어학부, 영어학부(야), 영어통번역학부, 러시아어과, 커뮤니케이션일본어학부, 비즈니스일본어학부, 비즈니스일본어학부(야), 중국어학부, 중국어학부(야), 중국지역통상학과, 러시아·인도통상학부, 터키·중앙아시아어과, 인도어과, 경영학부, 회계·세무행정학부, 스포츠·재활복지학부(재활복지전공), 스포츠·재활복지학부(사회체육전공)은 2013학년도 입학생이 학적변동없이 졸업하는 2016학년도 졸업자까지 존속한다.

나.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영어학부, 영어학부(야), 영어통번역학부, 러시아어과, 커뮤니케이션일본어학부, 비즈니스일본어학부, 비즈니스일본어학부(야), 중국어학부(야), 중국지역통상학과, 터키·중앙아시아어과, 인도어과, 경영학부, 회계·세무행정학부, 스포츠·재활복지학부(재활복지전공), 스포츠·재활복지학부(사회체육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학적변동으로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은 학년에 복학(재입학)하는 학생은 영어과, 영어과(야), 영어통번역과,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러시아어전공), 커뮤니케이션일본어과, 비즈니스일본어과, 비즈니스일본어과(야), 중국학부(야), 중국학부(중국지역통상전공),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터키·중앙아시아어전공), 인도학부(인도어전공), 경영학과, 회계세무행정학과, 재활복지학과, 사회체육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 이 학칙 시행 이전의 중국어학부와 러시아·인도통상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학적변동으로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은 학년에 복학(재입학)하는 학생은 중국어학부는 중국학부(중국언어문화콘텐츠전공) 또는 중국학부(커뮤니케이션중국어전공), 러시아·인도통상학부는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러시아지역통상전공) 또는 인도학부(인도지역통상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3.12.24.)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4.2.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 설치학년도) 계약학과는 2015학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영한다.

부 칙(개정 2014.6.19.)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4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영어과, 영어통번역과, 영어과(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영어학부(영어전공), 영어학부(영어통번역전공), 영어학부(야)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독일어과, EU지역통상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유럽학부(독일어전공), 유럽학부(EU지역통상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학칙 시행 이전에 프랑스어과, 이탈리아어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프랑스·이탈리아학부(프랑스어전공), 프랑스·이탈리아학부(이탈리아어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4.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스페인어과, 포르투갈(브라질)어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중남미학부(스페인어전공), 중남미학부(포르투갈어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5.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커뮤니케이션일본어과, 비즈니스일본어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일본어창의융합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6.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비즈니스일본어과(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일본어창의융합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일본어창의융합학부로 복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 타 야간학부(과)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7. 이 학칙 시행 이전에 태국어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어과, 베트남어과, 미얀마어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동남아시아학부(태국어전공), 동남아시아학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어전공), 동남아시아학부(베트남어전공), 동남아시아학부(미얀마어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8. 이 학칙 시행 이전에 한국어문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한국어문화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9.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경영학과, 회계세무행정학과, e-비즈니스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경영학부(경영전공), 경영학부(회계전공), 경영학부(e-비즈니스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0.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국제무역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국제무역유통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국제비서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국제비서·세무학부(국제비서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경제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경제데이터금융학부(경제학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3.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데이터경영·금융학부(데이터경영전공), 데이터경영·금융학부(금융보험수리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부(전공)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경제데이터금융학부(데이터경영전공), 경제데이터금융학부(금융보험수리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4.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디지털미디어학부(전자정보통신전공), 디지털미디어학부(인터넷미디어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부(전공)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디지털미디어공학부(전자정보통신전공), 디지털미디어공학부(인터넷미디어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5.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디지털미디어학부(정보보안수리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부(전공)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정보보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6. 이 학칙 시행이전에 전공배정을 받지 아니한 디지털미디어학부 재적생은 정보보호학과 또는 디지털미디어공학부 중 본인이 선택한 학부(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7.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글로벌자율전공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명칭이 변경된 파이데이아창의인재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4.10.28.)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4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러시아어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6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7학년도 졸업자부터는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러시아언어통상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러시아·인도통상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6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부에, 2017학년도 졸업자부터는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러시아언어통상전공) 또는 인도학부(인도지역통상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디지털미디어학부(정보보안수리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신설된 정보보호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5.5.15.)

(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10.1.)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5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동남아시아학부(태국어전공), 동남아시아학부(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어전공), 동남아시아학부(베트남어전공), 동남아시아학부(미얀마어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동남아창의융합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언어처리창의융합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동남아창의융합학부(언어처리창의융합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역사관광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9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역사관광·외교학부(역사관광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4.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외교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9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역사관광·외교학부(외교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5.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활복지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사회복지재활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6. 이 학칙 시행 이전에 G2융합커뮤니케이션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G2비즈니스융합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7.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중국학부(중국언어문화콘텐츠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부(전공)에, 2019학년도 졸업자부터는 G2비즈니스융합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8.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경영학부(e-비즈니스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부(전공)에, 2019학년도 졸업자부터는 G2비즈니스융합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9.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영상미디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영상언론융합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6.3.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설계복수전공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제32조의11(자기설계복수전공)의 경우는 2015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부칙(2014.6.19. 시행) 제2조제9호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경영학과, e-비즈니스학과, 회계·세무행정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7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경영학부(경영전공), 경영학부(e-비즈니스전공), 경영학부(회계전공) 또는 국제비서·세무학부(세무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부칙(2015.10.1. 시행)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동남아시아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8학년도 졸업자부터는 동남아창의융합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부칙(2015.10.1. 시행) 제2조제7호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중국학부(중국언어문화콘텐츠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8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부(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고, 2019학년도 졸업자부터는 G2비즈니스융합학부 또는 중국학부(커뮤니케이션중국어전공, 중국지역통상전공)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부 칙(개정 2016. 8. 30.)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변경 학칙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영어학부(영어전공), 영어학부(영어통번역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9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부(전공)에, 2020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영어학부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중국학부(커뮤니케이션중국어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명칭이 변경된 중국학부(중국어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3. 이 학칙 시행 이전에 G2비즈니스융합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명칭이 변경된 G2(영·중)융합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4.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유럽학부(독일어전공), 프랑스·이탈리아학부(프랑스어전공), 프랑스·이탈리아학부(이탈리아어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명칭이 변경된 유럽학부(독일언어문화전공), 유럽학부(프랑스언어문화전공), 유럽학부(이탈리아언어문화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5.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러시아언어통상전공),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터키·중앙아시아어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명칭이 변경된 러시아·터키중앙아시아학부(러시아언어통상전공), 러시아·터키중앙아시아학부(터키·중앙아시아어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6.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아랍어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9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20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중동·지중해지역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7.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인도학부(인도어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명칭이 변경된 인도학부(인도언어문화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8.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역사관광·외교학부(역사관광전공), 역사관광·외교학부(외교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명칭이 변경된 역사관광·외교통상학부(역사관광전공), 역사관광·외교통상학부(외교통상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9.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국제무역유통학부(국제무역전공), 국제무역유통학부(유통물류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명칭이 변경된 국제무역·마케팅학부(국제무역전공), 국제무역·마케팅학부(국제마케팅전공)에 각각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10.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영상언론융합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명칭이 변경된 영상콘텐츠융합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모집 중단에 따른 경과조치)

1.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법·경찰학부, 정보보호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소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가. 법·경찰학부(법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9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부(전공)에, 2020학년도 졸업자부터는 경찰정보보호학부(경찰행정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경찰정보보호학부(경찰행정전공)에 복학 또는 재입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교과과정이 유사한 학부(전공)로의 복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나. 법·경찰학부(경찰행정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경찰정보보호학부(경찰행정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정보보호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경찰정보보호학부(정보보호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2. 이 학칙 시행 이전에 국제비서·세무학부, 경제데이터금융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소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가. 국제비서·세무학부(세무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9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부(전공)에, 2020학년도 졸업자부터는 경영학부(회계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경영학부(회계전공)에 복학 또는 재입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교과과정이 유사한 학부(전공)로의 복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나. 국제비서·세무학부(국제비서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국제비서·경제금융학부(국제비서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다. 경제데이터금융학부(경제학전공), 경제데이터금융학부(금융보험수리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9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부(전공)에, 2020학년도 졸업자부터는 국제비서·경제금융학부(경제금융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라. 경제데이터금융학부(데이터경영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9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부(전공)에, 2020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컴퓨터소프트웨어융합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단, 컴퓨터소프트웨어융합학부로 복학 또는 재입학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교과과정이 유사한 학부(전공)로의 복학 또는 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컴퓨터공학과, 임베디드소프트웨어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9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20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컴퓨터소프트웨어융합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4. 이 학칙 시행 이전에 디지털미디어공학부(전자정보통신전공), 디지털미디어공학부(인터넷미디어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9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부(전공)에, 2020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지능형IT융합학부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5.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사회체육학부, 사회복지재활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의 소속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 가. 사회체육학부(생활체육지도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9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부(전공)에, 2020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스포츠산업융합학부(사회체육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나. 사회체육학부(골프전공), 사회체육학부(축구매니지먼트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 중 2019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부(전공)에, 2020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스포츠산업융합학부(스포츠산업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회복지재활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19학년도 졸업자까지는 동 학과에, 2020학년도 졸업자부터는 스포츠산업융합학부(재활복지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7. 02. 10.)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03. 01.)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 8. 24.)

(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2017학년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개정 2016. 12. 23, 2017. 3. 1.)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입학정원		전공배정정원		
				주간	야간	전공명	정원	
인문사회	영일중대학	영어학부		100				
		영어학부(야)			30			
		일본어창의융합학부		130				
		중국학부		70		중국어전공	(30)	
						중국지역통상전공	(40)	
		중국학부(야)			30			
		G2(영·중)융합학부		85				
	소 계		385	60				
	글로벌 인문융합대학	유럽학부		97		독일언어문화전공	(32)	
						프랑스언어문화전공	(32)	
						이탈리아언어문화전공	(33)	
				EU지역통상전공	33			
		중남미학부		100		스페인어전공	(60)	
						포르투갈어전공	(40)	
		러시아·터키중앙아시아학부		100		러시아언어통상전공	(65)	
						터키·중앙아시아어전공	(35)	
		동남아창의융합학부		160				
		중동·지중해지역학부		35				
		인도학부		55		인도언어문화전공	(30)	
						인도지역통상전공	(25)	
		한국어문화학부		60				
		파이데이아창의인재학과		25				
		역사관광·외교통상학부		60		역사관광전공	(30)	
	외교통상전공					(30)		
	소 계		725					
	글로벌 비즈니스대학	경영학부		105		경영전공	(60)	
						회계전공	(45)	
		국제비서·경제금융학부	국제비서전공	40				
			경제금융전공	45				
		국제무역·마케팅학부		70		국제무역전공	(40)	
						국제마케팅전공	(30)	
	글로벌비즈니스학과(계약학과)		(20)					
	소 계		260					
	글로벌 창의융합대학	영상콘텐츠융합학과		30				
		경찰정보보호학부	경찰행정전공	35				
				사이버경찰전공		20		
				정보보호전공		30		
		스포츠산업융합학부	재활복지전공	60		사회체육전공	(30)	
				스포츠산업전공		(30)		
	공학	국제학부		20				
예체능	소 계		220					
인문사회	글로벌 IT대학	컴퓨터소프트웨어융합학부		100				
		지능형IT융합학부		100				
		스마트팩토리학과(계약학과)		(20)				
		소 계		200				
총 계 <총 1,850명>				1,790	60			

*(계약학과)는 정원의 모집인원임.

2016학년도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학생입학정원		전공배정정원	
			주	야	전공명	정원(명)
인문사회	유럽미주대학	영어학부	100		영어전공	50
					영어통번역전공	50
		영어학부(야)		30		
		유럽학부	65		독일어전공	32
					EU지역통상전공	33
		프랑스·이탈리아학부	65		프랑스어전공	32
					이탈리아어전공	33
		중남미학부	100		스페인어전공	60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	100		포르투갈어전공	40	
				러시아언어통상전공	65	
				터키·중앙아시아어전공	35	
		소 계	430	30		
	아시아대학	일본어창의융합학부	130		-	
		중국학부	70		커뮤니케이션중국어전공	30
				중국지역통상전공	40	
중국학부(야)			30			
공학		동남아창의융합학부	160		-	
인문사회		인도학부	55		*언어처리창의융합전공	(10)
					인도어전공	30
		아랍어과	35		인도지역통상전공	25
		소 계	450	30		
	인문사회대학	한국어문화학부	60		-	
		법·경찰학부	60		법학전공	25
					경찰행정전공	35
		역사관광·외교학부	70		역사관광전공	35
					외교전공	35
		사회복지재활학과	30			
		소 계	220			
	상경대학	경영학부	110		경영전공	65
					회계전공	45
국제무역유통학부		70		국제무역전공	40	
				유통물류전공	30	
국제비서·세무학부		65		국제비서전공	40	
				세무전공	25	
				경제학전공	37	
	경제데이터금융학부	90		데이터경영전공	28	
			금융보험수리전공	25		
	소 계	335				
공학	이공대학	컴퓨터공학과	50			
		임베디드소프트웨어학과	40			
		정보보호학과	30			
디지털미디어공학부		60		전자정보통신전공	30	
예체능					인터넷미디어전공	30
					생활체육지도전공	30
		사회체육학부	70		골프전공	20
					축구매니지먼트전공	20
	소계	250				
인문사회	글로벌창의융합대학	파이데이아창의인재학과	25			
		G2비즈니스융합학부	85			
		영상언론융합학과	35			
		소계	145			
총 계			1,830	60		

*계약학과(10)는 정원의 모집

2015학년도 모집단위별 모집정원(개정 2016. 8. 30.)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	학생입학정원		전공배정정원	
			주	야	전공명	정원(명)
인문사회	유럽미주대학	영어학부	100		영어전공	50
				영어통번역전공	50	
		영어학부(야)		30		
		유럽학부	70		독일어전공	35
				EU지역통상전공	35	
		프랑스·이탈리아학부	70		프랑스어전공	35
				이탈리아어전공	35	
		중남미학부	100		스페인어전공	60
				포르투갈어전공	40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	100		러시아언어통상전공	65
				터키·중앙아시아어전공	35	
		소 계	440	30		
	아시아대학	일본어창의융합학부	130		-	
		중국학부	100		중국언어문화콘텐츠전공	30
				커뮤니케이션중국어전공	30	
				중국지역통상전공	40	
		중국학부(야)		30		
		동남아시아학부	160		태국어전공	40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어전공	40	
				베트남어전공	40	
				미얀마어전공	40	
		인도학부	55		인도어전공	30
				인도지역통상전공	25	
		아랍어과	40			
	소 계	485	30			
	인문사회대학	한국어문화학부	60		-	
		영상미디어학과	40			
		역사관광학과	40			
		법·경찰학부	70		법학전공	35
				경찰행정전공	35	
		외교학과	40			
		소 계	250			
	상경대학	경영학부	150		경영전공	65
					회계전공	50
					e-비즈니스전공	35
		국제무역유통학부	70		국제무역전공	40
					유통물류전공	30
		국제비서·세무학부	75		국제비서전공	45
					세무전공	30
		경제데이터금융학부	95		경제학전공	40
					데이터경영전공	30
					금융보험수리전공	25
소 계	390					
공학	이공대학	컴퓨터공학과	50			
		임베디드소프트웨어학과	40			
		정보보호학과	30			
디지털미디어공학부		60		전자정보통신전공	30	
				인터넷미디어전공	30	
인문사회		재활복지학과	40			
예체능		사회체육학부	80		생활체육지도전공	40
					골프전공	20
					축구매니지먼트전공	20
소계		300				
인문사회	글로벌창의융합대학	G2융합커뮤니케이션학과	25			
파이데이아창의인재학과		25				
*언어처리창의융합학과		(10)				
공학						
-	-	소계	50			
총 계			1,915	60		

*계약학과(10)는 정원의 모집

2014학년도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계열	대 학	학부/계열	모 집 단 위	학생입학정원(명)		전공배정정원(명)	
				주	야	전공명	정원
인문사회	유럽미주대학	영어계열	영어과	70	30		
			영어과(야)				
			영어통번역과	70			
		유럽계열	프랑스어과	35			
			독일어과	40			
			이탈리아어과	35			
		중남미계열	EU지역통상학과	40			
			스페인어과	60			
			포르투갈(브라질)어과	40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	100		러시아어전공	40
					러시아지역통상전공	25	
					터키·중앙아시아어전공	35	
		소 계	490	30			
	아시아대학	일본어계열	커뮤니케이션일본어과	65	30		
			비즈니스일본어과	65			
			비즈니스일본어과(야)				
		중국학부	중국학부	130		중국언어문화컨텐츠전공	40
						커뮤니케이션중국어전공	40
					중국지역통상전공	50	
		중국학부(야)		30			
			태국어과	40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어과	40			
		동남아시아계열	베트남어과	40			
			미얀마어과	40			
		아랍·인도계열	아랍어과	40			
			인도학부	60		인도어전공	35
					인도지역통상전공	25	
		소 계	520	60			
	인문사회대학	인문계열	한국어문학부	60		한국어문학전공	30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30
			영상미디어학과	40			
		사회계열	역사관광학과	40			
			법·경찰학부	80		법학전공	40
			외교학과	40		경찰행정전공	40
		소 계	260				
	상경대학	경영계열	경영학과	90			
			국제무역학과	55			
회계세무행정학과			75				
e-비즈니스학과			40				
국제비서학과			50				
경제금융계열		경제학과	40				
		데이터경영·금융학부	55		데이터경영전공	30	
		소 계	405		금융보험수리전공	25	
공학	이공대학	IT계열	컴퓨터공학과	45		전자정보통신전공	30
			임베디드소프트웨어학과	40		인터넷미디어전공	30
			디지털미디어학부	80		정보보안수리전공	20
		스포츠복지계열	재활복지학과	40		생활체육지도전공	40
			사회체육학부	80		골프전공	20
						축구매니지먼트전공	20
		소 계	285				
인문사회	-	글로벌자율전공학부	25				
		소 계	25				
총 계 <총모집인원 2,075명, 주간1,985명/야간 90명>				주	야		
				1,985	90		

[별표2] 계약학과 입학정원 (개정 2015.10.1, 2016. 8. 30, 2017.3.1.)

구분	단과대학	학과명[협약기관]	입학정원	학위
채용조건형	아시아대학	동남아창의융합학부 (언어처리창의융합전공) [(주)씨에스엘아이]	10명	공학사
재교육형	글로벌비즈니스대학	글로벌비즈니스학과	20명	국제경영학사
	글로벌IT대학	스마트팩토리학과	20명	공학사

[별표3] 학위 종별 해당학과 (개정 2014.10.28, 2015.1.1, 2015.5.15, 2015.10.1, 2016.3.30, 2016.8.30, 2016.12.23, 2017.3.1., 2017.8.24.)

학위종별	학 부(과)	비고
문학사	영어과, 영어과(야), 영어학부, 영어학부(야), 영어통번역과, 영어통번역학부, 유럽학부(독일언어문화전공, 프랑스언어문화전공, 이탈리아언어문화전공), 프랑스·이탈리아학부, 중남미학부, 일본어창의융합학부, 일본어학부, 커뮤니케이션일본어과, 커뮤니케이션일본어학부, 비즈니스일본어과, 비즈니스일본어과(야), 비즈니스일본어학부, 비즈니스일본어학부(야), 중국학부(중국언어문화컨텐츠전공, 중국어전공), 중국학부(야), 중국어학부, 중국어학부(야), 불어과, 프랑스어과, 독일어과, 스페인어과, 포르투갈(브라질)어과, 러시아어과, 러시아·터키중앙아시아학부(러시아어전공, 터키·중앙아시아어전공), 이탈리아어과, 동남아시아학부, 태국어과,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어과, 아랍어과, 중동·지중해지역학부, 인도어과, 인도학부(인도언어문화전공), 베트남어과, 미얀마어과, 중앙아시아어과, 한국어문화학부, 한국어문학부, 역사관광학과, 영상콘텐츠융합학과, 역사관광·외교통상학부(역사관광전공)	
국제비서학사	국제비서학과, 국제비서·경제금융학부(국제비서전공)	
정치학사	외교학과, 역사관광·외교통상학부(외교통상전공)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재활학과	
법학사	법·경찰학부, 법·경찰학부(법학전공)	
경찰행정학사	경찰정보보호학부(경찰행정전공)	
경영학사	경영학과, 회계·금융자산관리학과, 경영정보학과, 경영학부, 회계세무행정학과, 회계·세무행정학부, e-비즈니스학과, 국제무역·마케팅학부(국제마케팅전공), 국제비서·세무학부(세무전공)	
경제학사	경제학과, 데이터경영학과, 데이터경영·금융학부, 경제데이터금융학부, 국제비서·경제금융학부(경제금융전공)	
무역학사	국제무역학과, 국제무역·마케팅학부(국제무역전공)	
이학사	정보통계학과, 정보수리학과	
공학사	컴퓨터공학과, 임베디드IT학과, 임베디드소프트웨어학과, 디지털미디어학부, 디지털미디어학부(전자정보통신,인터넷미디어전공), 디지털미디어공학부, 경찰정보보호학부(사이버경찰전공), 경찰정보보호학부(정보보호전공), 컴퓨터소프트웨어융합학부, 지능형IT융합학부	
	언어처리창의융합학과, 동남아창의융합학부(언어처리창의융합전공), 스마트팩토리학과	계약학과
정보시스템학사	<삭제>	
체육학사	사회체육학부, 스포츠·재활복지학부(사회체육전공), 스포츠산업융합학부(사회체육전공, 스포츠산업전공)	
재활복지학사	재활복지학과, 스포츠·재활복지학부(재활복지전공), 스포츠산업융합학부(재활복지전공)	
글로벌인재학사	글로벌자율전공학부, G2(영·중)융합학부, 파이데이터창의인재학과	

학위종별	학 부(과)	비고
국제통상지역학사	유럽학부(EU지역통상전공), 중국지역통상학과, 중국학부(중국지역통상전공), 러시아·인도통상학부, 러시아·중앙아시아학부(러시아지역통상전공), 인도학부(인도지역통상전공)	
	특성화교육원 국제통상지역전문가 양성과정	GLE
국제언어(영어)학사	특성화교육원 국제언어전문가 양성과정	ILE
외국어(영어,일본어, 중국어)학사	실무외국어인력 양성과정	GLS
한국어교육학사	한국어교육전공	
국제비서학사	국제비서전공	
관광통역학사	관광통역전공(영어,일본어,중국어)	
국제통상물류학사	국제통상물류전공	
지중해지역학사	지중해지역연구전공	연계 전공
중남미지역학사	중남미비즈니스전공	
동남아지역학사	동남아지역연구전공	
국제지역경영학사	EBK전공	
호텔경영학사	호스피탈리티전공	
이문화경영학사	이문화경영전공	
공학사	글로벌스마트팩토리 전공	
인문경영학사	글로벌마케팅전공	인문 융합 전공
국제개발협력학사	글로벌개발협력전공	
인문IT학사	글로벌모바일비즈니스전공	
글로벌인재학사	<삭제>	
국제경영학사	글로벌비즈니스학과	계약학과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 ○
생년월일 ○○○○년 ○○ 월 ○○일

위 사람은 이 대학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학사의 자격을 인정함.

전 공 : ○○ 학 (○○학사)
○○ 학 (○○학사)
부전공 : ○○ 학

○○○○ 년 ○○ 월 ○○ 일

○○ 대학장 ○○(학위) ○ ○ ○

위 인정에 의하여 학사 학위를 수여함.

○○○○ 년 ○○ 월 ○○ 일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학위) ○ ○ ○(인)

[별지 제 2호 서식]

학위번호 : 부산외대 00학 0000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as conferred upon

○ ○ ○

the degree of

Bachelor of ○ in ○

At the Department of ○ ○

with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thereto pertaining,

Given a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ebruary 24, 2012

○ ○ ○

DEAN, COLLEGE OF ○○○

○ ○ ○

PRESIDENT OF THE UNIVERSITY